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2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3. 1.

(주)컬러소프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2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식회사 컬러소프트
대표자	김기환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웹하드사업자(오렌지파일) / 약 2,000명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김기환 대표이사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2022. 1월

- 신고·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발견시 온라인 신고기능을 통해 접수하며, 홈페이지 내 저작권 보호센터 절차에 따라 처리 진행
- 제목·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
 -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제목·명칭등에 대해 식별 및 검색이 되지 않도록 설정
-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
 - (주)바른기술연구소의 BTFS 시스템 적용 (DNA 필터링), 방통위 HASH 시스템 연동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 팝업 또는 공지사항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촬영물등 의심 영상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그 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자체 교육을 통한 모니터링 인력의 인식 제고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적발된 이용자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 경각심 고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내부결재 >



(주)컬러소프트

443-4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22-4 만월빌딩 4층

Tel 031-202-5871 Fax 031-205-5877

문서번호 : 220115-01

2022.01.15

수 신 : 내부결재

참 조 :

제 목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수립

1. 관련

- 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3404(2021.11.16.,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P2P) 대상 설명회 개최 알림)
- 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66(2022.01.11.,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제출 안내)

2. 위 1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5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 6등

나. 기재사항 [세부사항 붙임 참조]

-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검색제한 조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 신고접수 및 처리 결과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대한 내규 및 운영관련 사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진행 사항 등

(주)컬러소프트 대표이사 김기환.



	불법촬영물등	불법촬영물등
결 재	유통방지 책임자	유통방지 담당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서

주식회사 컬러소프트

1. 기본원칙

주식회사 컬러소프트(이하 '회사')는 불법촬영물등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에 대한 유해 정보와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한 제재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예방조치를 상시 강구하여야 한다.

2. 계획 및 시행

회사는 불법촬영물 등의 디지털 성범죄정보 삭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불법영상물 유형	세부유형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불법촬영정보 (제14조) -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불법촬영정보 - 성적촬영물의 당사자 동의 없는 유포 정보 * 성적 허위영상정보 (제14조의 2) - 지인능욕, 딥페이크 등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으로 편집·합성한 영상 *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노출 정보 (제24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및 사진 등
기타 디지털 성범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불법촬영정보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 - 성폭력 처벌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특정인의 초상을 이용하여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

2.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

회사는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증절차 및 청소년유해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회사는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등을 교육하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의거, 서비스 약관 및 정책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2.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신고기능 마련

2.3.1.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계 법령(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2.3.2.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영상물 발견 시 누구나 PC, 모바일등 신고버튼을 통해 신속히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4. 피해상담과 고충처리 정책 수립

회사는 유해정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구제 조건의 지연 및 처리 미속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등 신고 조치함으로써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5. 불법촬영물등 검색, 게재제한 조치 수립

2.5.1.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능 적용하며 연관검색어 등의 노출을 금지한다.

2.5.2.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DNA 필터링) 상시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6.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2.6.1. 홈페이지(PC, 모바일) 메인 화면 및 기타 팝업화면에 불법촬영물등의 경고 배너 및 공지사항을 노출시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노력한다.

2.6.2.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추정되는 영상물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있으며, 로그기록이 위·변조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3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7.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2.7.1.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고 포스터 노출을 통한 이용자 경각심 고취시켜야 한다.

3. 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정	부
성명	김기환	최○○○
부서	대표이사	고객만족센터
직책	대표이사	팀장
지정일	2022. 01. 05.	2022. 01. 05.

4. 유통방지 교육 및 책임자 준수사항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5.1. 회사는 상시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등을 교육한다.
- 5.2. 사내 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는 외부기관에서 진행하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한다.
- 5.3.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모니터링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5.4.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관련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 5.5.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처리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간 보관한다.
- 5.6. 모니터링 인원의 일일 점검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해당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5. 업무 대응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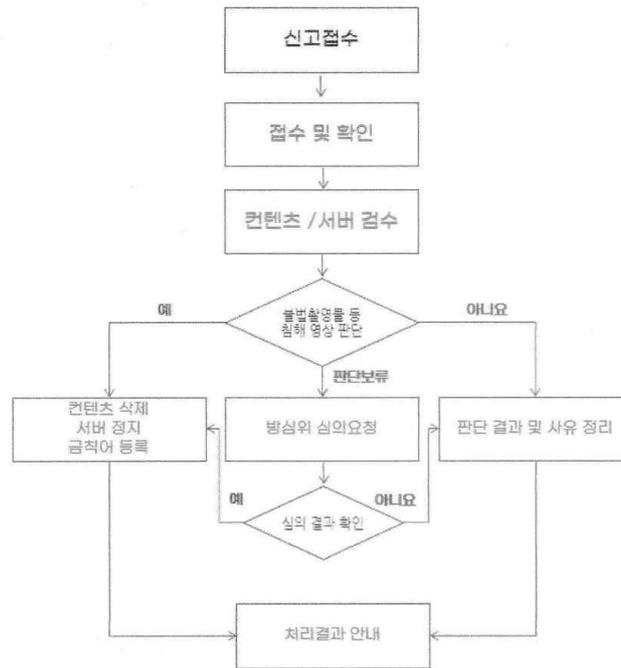
- 5.1.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 시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촬영물 등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관련 컨텐츠 및 해당 서버의 접속차단을 한다. 단, 확인 및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5.2. 해당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한 서버 운영자에게는 경고 문구/접속차단 안내를 보낸다.

5.3.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결과를 빠르게 회신한다

5.4. 아래의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신고/삭제처리 프로세스를 참고.

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6. 필터링 구축 현황

6.1. ㈜버킷스튜디오의 Smart Filter 시스템 적용 중 (DNA 필터링)

6.2.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제한 기술 적용사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특징정보 획득 및 DB 구축

- 특징정보 추출 및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 수신
-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정보 추출하여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로 전달
-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정보가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에 존재하는지 비교 요청
-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일치/불일치)를 수신
-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를 '게재 제한 기술'에 전달하고 식별결과가 일치하면 게재 제한, 일치하지 않으면 게재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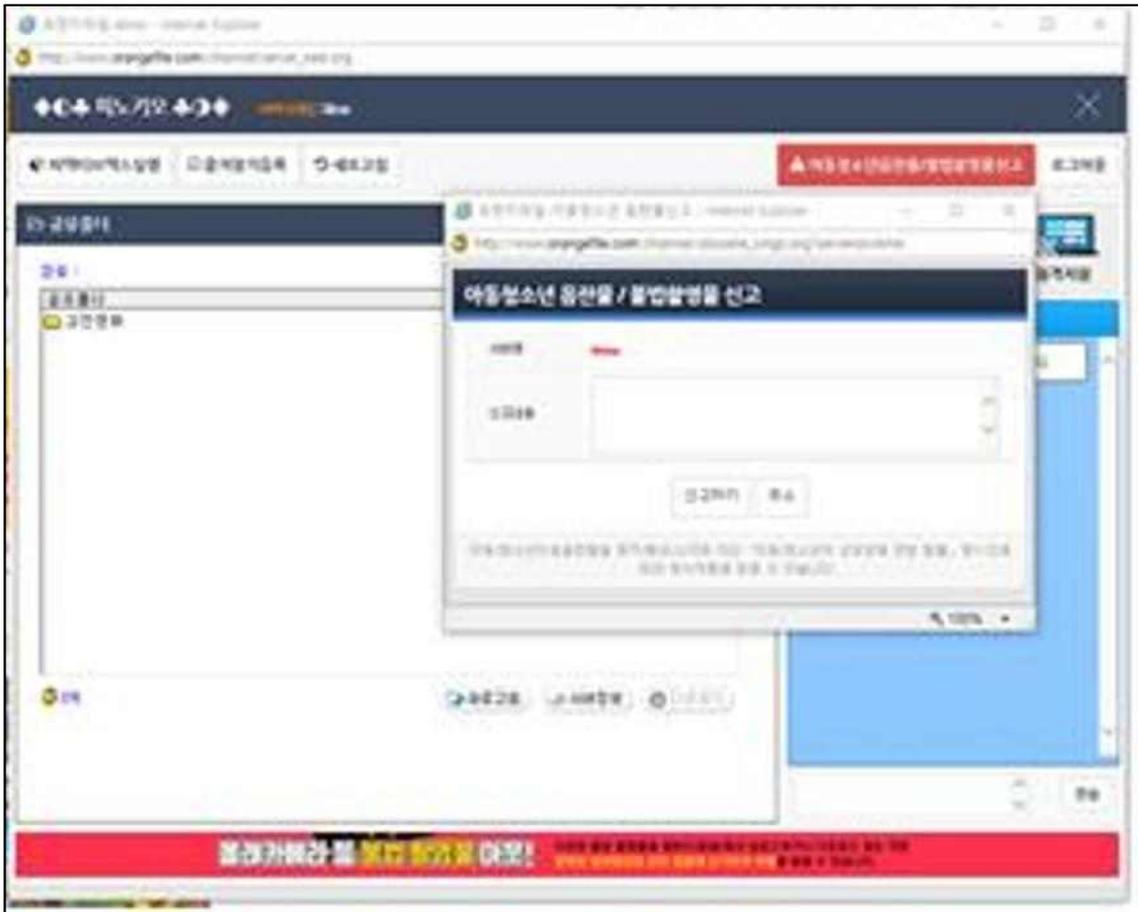
7. 기타 운영사항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이용자 보호 계획서"의 내용을 따른다

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신고기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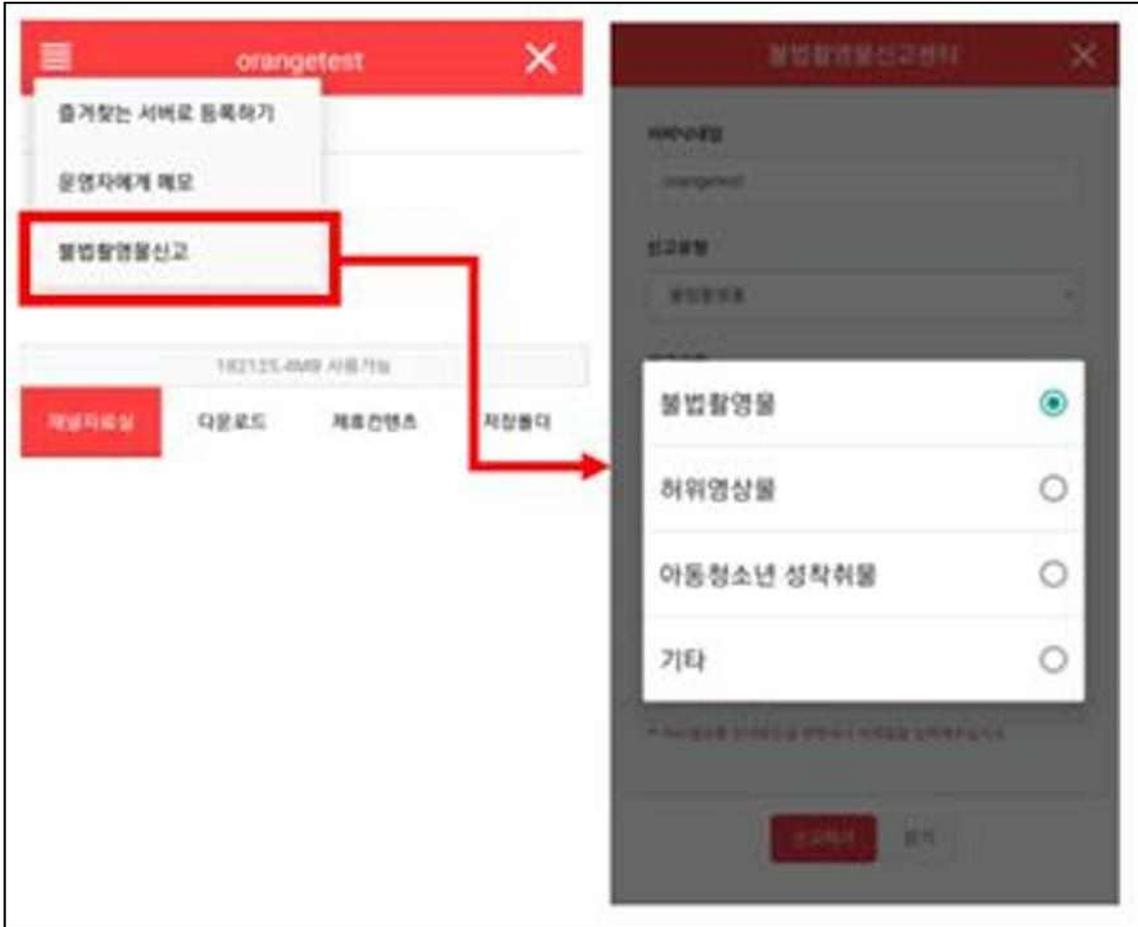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계 법령(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10일부터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영상물 발견시 신고버튼을 통해서도 신고접수 가능하도록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페이지 : <http://www.orangefile.com/campaign/index.org>

- PC





○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 주식회사 컬러소프트 고객센터, 031-202-5871 운영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의심영상물에 대한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상담이 어려운 경우 메일을 통한 상시 신고 가능

NO	서비스이름	회원ID	신고유형	신고사유	처리결과수신여부	진행상태	답변상태	등록날짜	처리완료	
3	orange!est	wee!est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 0000 종 신고합니다.	kschoi@colorsoft.co.kr / 010-9999-9999	신고접수	답변준비중	2021-12-09 14:48	0000-00:00 00:00	[상세] [삭제]
4	orange!est	wee!est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테스트 신고합니다.	keunsu77@hotmail.com / 01032558343	신고접수	답변완료	2021-11-19 18:04	2021-12-09 14:47	[상세] [삭제]

3)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

-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능 적용
 - 유해단어 리스트 (예시)

불법촬영물/촬영물/저작권 금치어목록	금치어(예시)
불법촬영물	아동 청소년이용촬영물
불법촬영물(인물)	비밀정보(국가비밀)
저작물	저작물
계	34298
계	34128

NO	유형	금치어	등록일	등록자	대상	종류
34129	저작물	무단복합	2022-03-18	김기훈	이공물 <출판 > 전자	34일 34회
34128	저작물	무단복합	2022-03-10	김기훈	이공물 <출판 > 전자	34일 34회
34127	저작물	비밀정보	2022-03-07	김기훈	이공물 <출판 > 전자	34일 34회
34126	저작물	아동청소년	2022-03-07	김기훈	이공물 <출판 > 전자	34일 34회

○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

- 불법촬영물등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설정 여부,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포함) 적용 여부 등 기재
- 검색어 노출 제한
 - PC

오렌지 파일검색결과 LOCATION | 홈 > 파일검색결과

▶ 아동·청소년이용촬영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검색 | 파일명 서명목록 **HELP** 검색

검색하신 단어는 불법촬영물등 연상단어로 검색이 제한됩니다. 제휴물(저작물)에 한하여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MOBILE

SKT 100% 오후 3:27

재년자료실

아동·청소년이용촬영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검색어는 디지털성범죄 연상단어로 검색 차단되었습니다.

3584.5MB 사용가능

재년자료실 다운로드 제휴콘텐츠 저장폴더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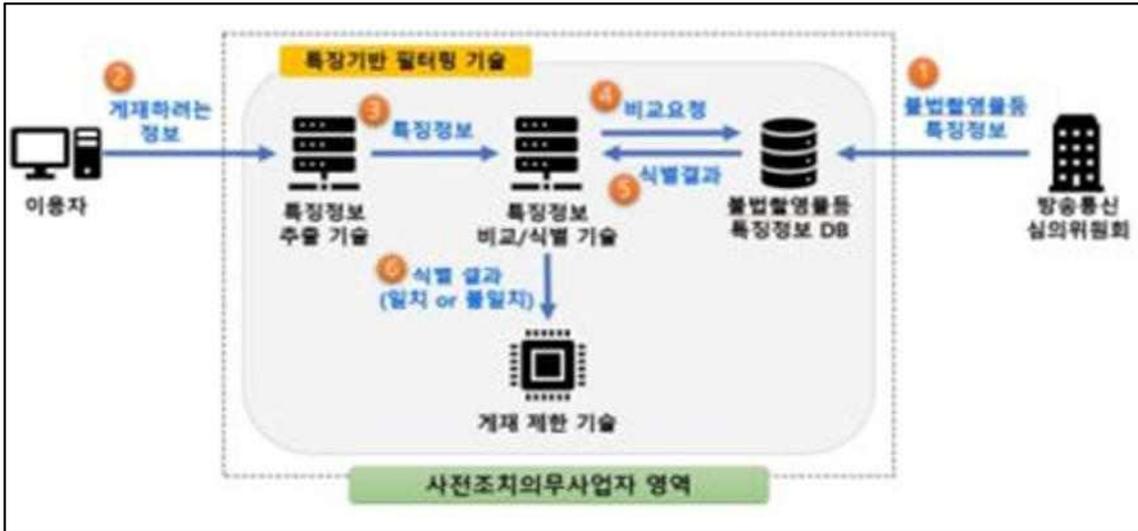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2021년 11월부터 기존 불법음란물 필터링 관련 업체를 통해 불법 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성능평가를 완료하고, 기술 테스트를 완료하여 적용 중에 있음

· (주)바른기술연구소의 BTFS 시스템 적용 (DNA 필터링)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I융합시험연구소</p> <p>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전화: 031-724-0114, Fax: 031-724-0189</p>	<p>보고서번호: 2022-DNA-018</p>	
<p>1. 의뢰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치의무사업자 : 주식회사 컬러소프트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22-4 안월빌딩 4층 · 접수일자 : 2022.10.31. <p>2. 보고서 용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징기반 불법촬영물등 비교/식별(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결과 확인</p> <p>3. 필터링 기술 적용 서비스 : 오렌지파일, 오렌지파일 모바일</p> <p>4. 필터링 기술 개발사 : 바른기술연구소 주식회사</p> <p>5. 필터링 기술 식별정보 : BTFS ver 1.0.0</p> <p>6. 성능평가 기간 : 2022.10.26. ~ 2022.11.10.</p> <p>7. 성능평가 결과 : 통과</p> <p>8. 성능평가 내용 : 평가결과보고서 참조</p>		
확 인	<p>작성자 직 책 : 시험원 성 명 : 민경호 민경호</p>	<p>승인자 직 책 : 팀 장 성 명 : 이용호 이용호</p>
<p>2022.11.16.</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인)</p>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제한 기술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특징정보 획득 및 DB 구축
- ② 특징정보 추출 및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 수신
- ③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정보 추출하여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로 전달
- ④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정보가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에 존재하는지 비교 요청
- ⑤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일치/불일치)를 수신
- ⑥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를 ‘게재 제한 기술’에 전달하고 식별결과가 일치하면 게재 제한, 일치하지 않으면 게재 허용



순번	서비스명	필터링 적용	적용 기술	미적용 사유
1	오렌지파일	유	상용SW기술 (바른기술연구소 BTFS)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사전경고 조치 시행

- 불법촬영물 유통적발시 조치 사항 공지

공지사항

LOCATION | 홈 > 공지사항

▶ 오렌지파일에서 알리는 공지사항입니다. 꼭 읽어 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필독]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

작성일 : 2021-12-01

디지털성범죄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020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렌지파일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05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신고센터)을 운영하여 불법촬영물등의 검색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에 따라 빅파일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를 시작합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란,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오렌지파일)의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추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게재제한 하는 것으로, 이러한과정을 '불법촬영물등 DNA 필터링' 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지 않도록 이용자여러분의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파일을 공유할 경우 공유 제한 조치와 함께 전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안내 드립니다.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0일

적용내용 :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기능 마련 및 삭제 요청의 처리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게재 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로그기록 보관

-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추정되는 영상물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있으며, 로그기록이 위·변조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3년간 유지·관리하고 있음

· <로그종류>

- ① 신고·삭제요청 처리에 포함하는 로그 기록 : 신고일자·유형 처리결과 등
- ② 검색기반 필터링에 포함하는 로그 기록 : 설정 단어 유형·등록일자·삭제일자·검색제한 필터링 작동여부 등
- ③ 특징기반 필터링 및 게재제한에 포함하여야 할 로그기록 : 파일명, 게시번호, 업로드, 계정/일시/결과 값, 필터링 작동여부, 차단값 등

저작권/음란물모니터링 현황						
< 2022.01 >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저작권 음란물 기타
2 저작권 음란물 기타	3 저작권 음란물 기타	4 저작권 음란물 기타	5 저작권 음란물 기타	6 저작권 음란물 기타	7 저작권 음란물 기타	8 저작권 음란물 기타
9 저작권 음란물 기타	10 저작권 음란물 기타	11 저작권 음란물 기타	12 저작권 음란물 기타	13 저작권 음란물 기타	14 저작권 음란물 기타	15 저작권 음란물 기타
16 저작권 음란물 기타	17 저작권 음란물 기타	18 저작권 음란물 기타	19 저작권 음란물 기타	20 저작권 음란물 기타	21 저작권 음란물 기타	22 저작권 음란물 기타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 등 자체 노력 중

- 불법유통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고 포스터 노출을 통한 이용자 경각심 고취

OUT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아웃!

최근 사이버 상에서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의 유통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과 사회적 비용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이용자 여러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웹하드에서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은
영역한 범죄행위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주의한 인터넷 이용으로 간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기술적 조치 무력화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음으로 해당 목록: 0/1 총 필요한 권한자: 1 개

파일이름	파일크기	호환자	상태
633 폭격대 (633 Squadron, 1964) 1.A	717,834KB	1	대기중

당첨자에게만 해당되는 개인정보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첨 - 청소년이본인만본인본인 성적, 범죄, 수사관 등은 7개월, 청소년이 당첨으로 인해 본인과 친밀, 제11조에 따른 불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만 표시 성명 및 생년월일 표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표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표시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2022. 1. 1. ~ 12. 31. 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삭제요청 건수 없음

<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 대상기간 : '22.1.1. ~ 12.31.(신고접수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 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등	-	-	-	-	-	-	-	-	-	-	-	-	-
		기관·단체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신고사유	성적 불법촬영물	-	-	-	-	-	-	-	-	-	-	-	-	-
		성적 허위영상물	-	-	-	-	-	-	-	-	-	-	-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	-	-	-	-	-	-	-	-	-	-	-
처리 결과	삭제·접속차단		-	-	-	-	-	-	-	-	-	-	-	-	
	방심위 심의요청	삭제·접속차 단	-	-	-	-	-	-	-	-	-	-	-	-	
		각하·해당없 음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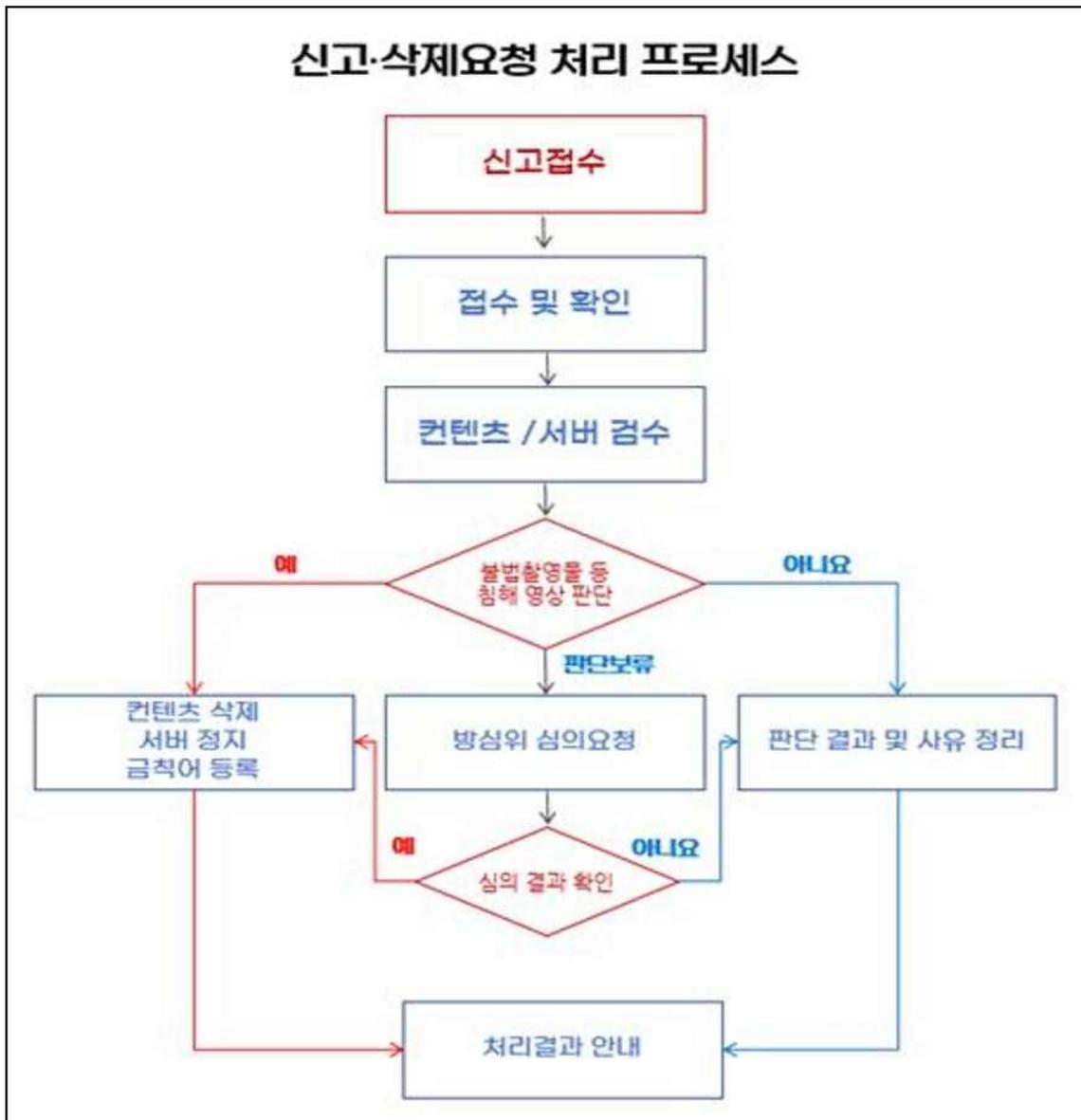
○ 관련 규정

- 2022년 1월에 제정된 사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서”의 제5조 “업무 대응 프로세스”에 따름

○ 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회사내 신고·삭제 요청시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 시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촬영물 등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관련 콘텐츠 및 해당 서버의 접속차단을 한다.
단, 확인 및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해당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한 서버 운영자에게는 경고 문구/접속차단 안내를 보낸다.
- ③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결과를 빠르게 회신한다.



○ 기타 운영관련 사항

-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이용자 보호 계획서”의 내용을 따른다

- ①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 되도록 하고, 3년 이상 관련 기록을 보관한다.
-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이상 보관한다.
-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연 2시간 이상)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분	성명	부서	직책	지정일
정	김기환	대표	대표이사	2015-01-05
부	최OO	고객만족센터	팀장	2015-01-05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분	교육일 (수료일)	교육명	참석자	시간	교육기관
법정교육	2022-11-1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김기환	2	방송통신위원회
법정교육	2022-10-1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최OO	2	방송통신위원회

발급번호 : 2022-il-025-0002

교육 수료증

성 명 : 김기환

소 속 : (주)컬러소프트

교육과정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교육기간 : 2022. 11. 14. ~ 2022. 11. 14.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 11. 14.



방송통신위원회

발급번호 : 2022-il-025-0001

교육 수료증

성 명 : 최**

소 속 : ㈜컬러소프트

교육과정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교육기간 : 2022. 10. 19. ~ 2022. 10. 19.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 10. 19.



방송통신위원회